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23. 9. 18.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18호로 2023년 9월 6일 이성수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하수관거의 증설 및 개량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침수 피해가 속출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및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사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9. 13. ~ 9. 17.):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하수관거의 증설 및 개량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침수 피해가 속출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및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고 15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중

침수피해 고위험 지역의 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현장 여건에 맞게 침수방지시설을 적절한 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10조에서는 주택별 지원액 한도 명시와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원 대상에게 침수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 안 제12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권장, 과거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 제공, 설치 지원에 관한 홍보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에서부터 안 제15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운영,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2022년 8월 ~ 2023년 3월에 걸쳐 서울시에서 시행된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에 따르면 우리 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필요 대상이 2,352세대로 집계되었으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폭우가 잦아짐에 따라 풍수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4 ~ 8 (생략)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 10 ~ 18 (생략)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 ⑥(생략)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1.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가.
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저류된 물을 배출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나. 해안침수예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
시한 지도

3.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

나.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

다.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
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3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공간"이란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목
의 지구를 말한다.

가. 영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나.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
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
해가 우려되는 지구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3 ~ 9(생략)

4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물막이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②(생략)

5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 21(생략)

② (생략)

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